C - 08 - 2015

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

2015. 11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C - 08 - 2015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안전보건공단 이덕재

○ 개정자 :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 정성춘

○ 제·개정 경과

- 1999년 11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- 1999년 12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- 2006년 7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- 2006년 9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- 2011년 6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2011년 12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2015년 11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고용노동부고시 제2006-29호 (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)
-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(KOSHA GUIDE C-25-2011)
- 건설현장 작업발판 사용실태 조사 연구(안전보건공단, 2010)
- 건설현장 작업발판에서 넘어짐에 의한 떨어짐 예방 연구(안전보건공단, 2014)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,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9조, 제13조, 제42조, 제45조, 제55조 제1항, 제56조, 제63조, 제67조, 제337조
- 고용노동부고시 제2006-29호(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)
-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-36호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
- 노동부고시 제2009-32호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고시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 규격 및 자료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 내용이 있는 경우 동 지침에 우선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5년 12월 7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에 제9조(작업발판 등),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,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45조(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), 제55조 제1항(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), 제56조(작업발판의 구조), 제63조(달비계의 구조), 및 제67조(말비계)에 의하여 근로자의 추락위험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재료, 구조, 설치 및 사용에 필요한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설현장의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작업발판"이라 함은 높은 곳에서 추락이나 발이 빠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과 자재운반 등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발판을 말한다.
 - (나) "수평재"라 함은 작업발판의 긴 방향으로 걸쳐 바닥재를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.
 - (다) "보재"라 함은 작업발판의 짧은 방향으로 걸쳐 바닥재를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.

C - 08 - 2015

- (라) "바닥재"라 함은 수평재와 보재 위에 놓여진 바닥판을 형성하는 부재를 말한다.
- (마) "걸침고리"이라 함은 수평재 또는 보재를 지지물에 고정시킬 수 있게 만들 어진 갈고리형 철물을 말한다.
- (바) "선반지주"라 함은 외줄비계에 설치할 작업발판을 지지하기 위한 삼각틀을 말한다.
- (사) "발끝막이판"이라 함은 이탈된 부품이나 작업 중인 공구 등이 발끝에 차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닥면 주변을 따라 수직으로 둘러쳐진 판을 말한다.
- (아) "작업대"란 비계용 강관에 설치할 수 있는 걸침고리가 용접 또는 리벳 등에 의하여 발판에 일체화되어 제작된 작업발판을 말한다.
- (자) "통로용 작업발판"이란 작업대와 달리 걸침고리가 없는 작업발판을 말한다.
- (차) "작업계단"이란 지지대, 계단 발판 및 걸침고리로 구성된 계단형 작업발판을 말한다.
- (2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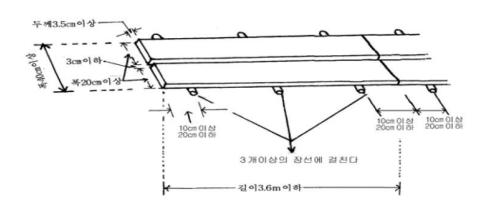
4. 작업발판의 구조 및 설치기준

4.1 목재 작업발판

작업장의 작업발판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-54호(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)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나, 부득이 목재 작업발판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.

C - 08 - 2015

- (1)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판재의 치수는 폭이 두께의 5~6배 이상 되어야 하고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, 두께는 3.5cm 이상, 길이는 3.6m 이내 이어야 한다.
- (2) 2개의 바닥재를 평행으로 사용할 경우 바닥재 사이의 틈은 3cm 이하 이어야 한다.
- (3) 작업발판의 장방향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해야 한다.
- (4) 건물벽체와 작업발판과의 간격은 30cm 이내로 한다.
- (5) 작업발판에 설치하는 발끝막이판은 높이 10c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.
- (6) 작업발판 1개당 최소 3개소 이상 장선에 지지하여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않 도록 철선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.
- (7) 발판 끝부분의 돌출길이는 10cm 이상 20cm 이하가 되도록 한다.
- (8) 작업발판은 재료가 놓여있더라도 통행을 위하여 최소 20c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.
- (9) 작업발판은 사용할 때 하중과 장선의 지지간격에 따라서 응력의 상태가 달라 지므로 〈표1〉에 의한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

〈그림 1〉 목재 작업발판의 구성

C - 08 - 2015

〈표 1〉 작업발판으로서 목재의 허용응력

허용응력도	압축	인장 또는 휨	전단	
목재의 종류	(MPa)	(MPa)	(MPa)	
적송, 흑송, 회목	12.0	13.5	1.05	
삼송, 전나무, 가문비나무	9.0	10.5	0.75	

4.2 강재 작업발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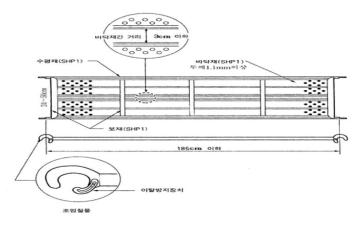
강재 작업발판은 작업대, 통로용 작업발판 및 작업계단으로 구분되며 작업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이다.

4.2.1 작업대

작업대는 〈그림2〉와 같이 바닥재, 수평재, 보재 및 걸침고리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.

- (1) 작업대는 바닥재를 수평재와 보재에 용접하거나, 절판가공 등에 의하여 일 체화된 바닥재 및 수평재에 보재를 용접한 것이어야 한다.
- (2) 걸침고리 중심 간의 긴 쪽 방향의 길이는 185㎝이하 이어야 한다.
- (3) 바닥재의 폭은 24cm 이상 이어야 한다.
- (4) 2개 이상의 바닥재를 평행으로 설치할 경우에 바닥재간의 간격은 3cm 이하 이어야 한다.
- (5) 걸침고리는 수평재 또는 보재에 용접 또는 리벳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.
- (6) 바닥재의 바닥판(디딤판)에는 미끄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7) 작업대는 재료가 놓여 있더라도 통행을 위하여 최소 2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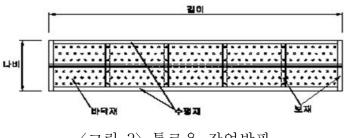
- (8) 작업대에 설치하는 발끝막이판은 높이 10cm 이상이 되도록 한다.
- (9) 작업대 또는 통로용 작업발판을 경사지게 설치할 경우에는 30°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.



〈그림 2〉작업대

4.2.2 통로용 작업발판

통로용 작업발판은 〈그림3〉과 같이 바닥재, 수평재 및 보재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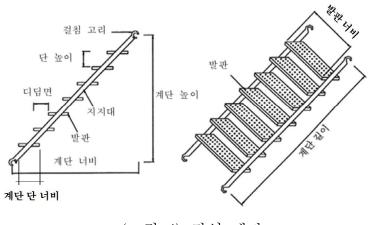
〈그림 3〉 통로용 작업발판

- (1) 강재 통로용 작업발판은 바닥재와 수평재 및 보재를 용접 또는 절곡 가공 등 기계적 접합에 의한 일체식 구조이어야 한다.
- (2) 알루미늄 합금재 통로용 작업발판은 바닥재와 수평재 및 보재를 압출 성형이나 용접 또는 기계적 접합에 의한 일체식 구조이어야 한다.
- (3) 통로용 작업발판의 너비는 20cm 이상이어야 한다.

- (4) 바닥재가 2개 이상으로 구성된 것은 바닥재 사이의 틈 간격이 3cm 이하이 어야 한다.
- (5) 바닥재의 바닥판에는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6) 통로용 작업발판은 설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며, 제조자는 제품에 1종 또는 2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표시를 하여야 한다.
 - (가) 지점거리를 180±5cm로 설치하는 제품을 1종이라 한다.
 - (나) 지점거리를 1종과 다르게 설치하는 제품을 2종이라 한다.

4.2.3 작업 계단

작업 계단은 〈그림4〉와 지지대, 계단발판 및 걸침 고리로 구성되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.



〈그림 4〉 작업 계단

- (1) 지지대, 계단발판 또는 걸침고리는 용접 또는 절곡 가공 등 기계적 접합에 의한 일체식 구조이어야 한다.
- (2) 단 높이는 24cm 이하이어야 하고,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 고정된 구조이어야 한다.
- (3) 계단의 단 너비는 35cm 이상이어야 하며,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 고정된 구조 이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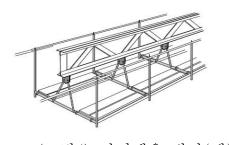
C - 08 - 2015

- (4)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.
- (5) 계단발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러짐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, 물건을 적치하거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.
- (6)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의 측면이 개방될 경우에는 안전난간 을 설치하여야 한다.

4.3 기타 작업발판

4.3.1 달(달대)비계용 발판

- (1) 작업발판은 폭을 40cm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한다.
- (2)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비계의 보 등에 연결하거나 고정하여야 하고, 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.
- (3) 달기와이어로프·달기체인·달기강선 또는 달기섬유로프는 한 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보·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풀리지 않도록 설치한다.



〈그림4〉달비계용 발판(예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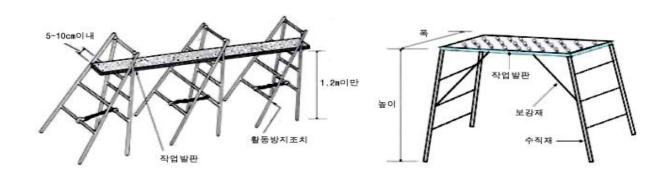
〈그림5〉달대비계용 발판(예)

4.3.2 말비계형 발판

(1) 작업발판은 충분히 넓이를 확보하고 3점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.

C - 08 - 2015

- (2) 작업발판 설치 높이는 수직고 1.2m 미만 이어야 한다.
- (3)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5~10cm 이내로 하며 각각의 각주 사다리는 벌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4) 지주 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°이하로 하고, 지주 부재와 지주 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 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5)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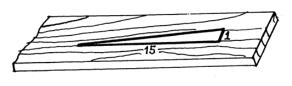


〈그림 6〉 말비계형 발판(예)

5. 작업발판의 재료

5.1 목재 작업발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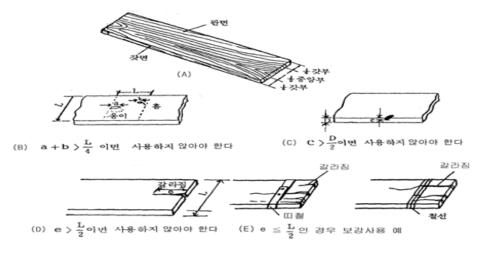
(1)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제재목은 나뭇결이 곧은 장섬유질의 것으로써 경사가 〈그림 7〉과 같이 1:15 이하이어야 한다.



〈그림 7〉나뭇결의 경사

C - 08 - 2015

- (2)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옥외에서 충분히 건조시킨 함수율이 15~20% 정도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.
- (3)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옹이, 갈라짐, 부식 및 변형 등이 없는 것으로 강도상의 결점이 적어야 하며 허용한도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.
 - (가) 결점이 판면의 중앙에 있을 경우에는 개개의 크기가 발판 폭의 1/5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 - (나) 결점이 발판의 갓면에 있을 경우에는 발판 두께의 1/2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.
 - (다) 결점이 발판의 폭과 동일한 길이 내에 있는 결점치수의 총합이 발판 폭의 1/4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 - (라) 발판단부의 갈라진 길이는 〈그림 8〉의 (D)와 같이 발판 폭의 1/2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갈라진 부분이 1/2이하인 경우에는 철선 또는 띠철로 감아 사용해야 한다.



〈그림 8〉 목재 작업발판 재료의 사용가능 한도

5.2 강재 작업발판

(1) 작업발판의 각부는 현저한 손상, 변형 또는 부식이 없어야 한다.

C - 08 - 2015

- (2) 강재 작업발판의 각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성질 및 강도는 방호장치 의무 안전인증 고시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-54호)에 적합하거나 그와 동등이상 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
- (3) 이 지침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사항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(고용 노동부고시 제2013-54호) 중 제36조(성능기준 및 시험방법)의 규정에 정하 는 바에 의한다.

6. 작업발판 설치 및 해체 시 주의사항

- (1)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2) 근로자가 작업발판 고정용 못, 철선 및 볼트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4) 작업발판을 해체 시 그 주변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시킨다.
- (5)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 작업여건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임시로 손잡이를 해체하는 경우에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게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(6) 안전난간에 관련된 제반 규정은 안전보건규칙에 준한다.

7. 작업발판 사용 시 준수사항

(1) 작업발판 사용 시『작업발판 점검계획』을 수립하여 당해 작업 시작 전에 작업 발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〈부록 4〉와 같이 "작업발판 점검 결과표" 를 당해 작업장에 게시하고 작업발판 주변에 지적된 내용을 표시하여 작업

C - 08 - 201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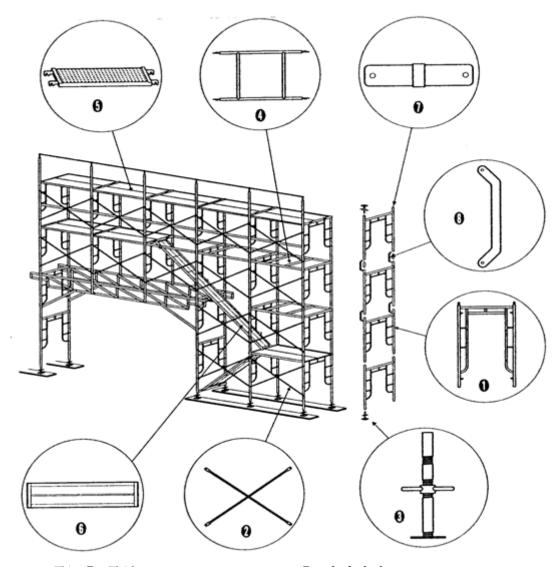
발판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점검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가) 점검일시
- 나) 점검범위
- 다) 각 항목별 점검내용
- 라) 점검자 및 확인자 지정
- 마) 이상 여부에 대한 조치 방법
- 바) 기타 필요한 사항
- (2) "(1)"항에 따른 점검결과 설치된 작업발판이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 는 근로자가 그 작업발판을 사용하기 전까지 개선하여야 한다.
- (3) 재사용 강재 작업발판 사용 시에는 작업장에 작업발판을 반입하는 시점에 KOSHA GUIDE C-25-2011(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)에 의거 작업발판의 재료 성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4)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및 각 재료별 최대적재수량을 비계의 구조에 따라 정한 후 그 내용을 게시하여 근로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5) "작업발판 사용 시 준수해야 할 주요사항"을 〈부록 5〉와 같이 정한 후 그 내용을 게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.

C - 08 - 2015

〈부록 1〉

강관틀비계용 작업발판 설치(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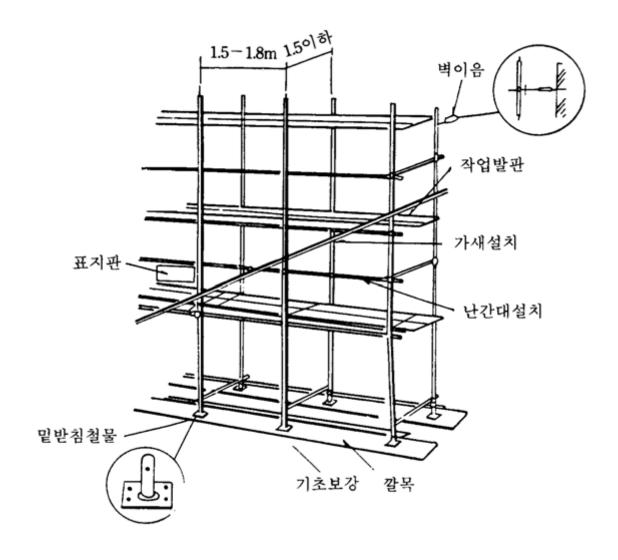


- 주) ① 주틀
 - ② 교차 가새
 - ③ 조절형 받침철물
 - ④ 띠장틀

- ⑤ 작업발판
- ⑥ 통로용 발판
- ⑦ 강관 틀비계용 주틀의 연결핀
- ⑧ 강관 틀비계용 주틀의 암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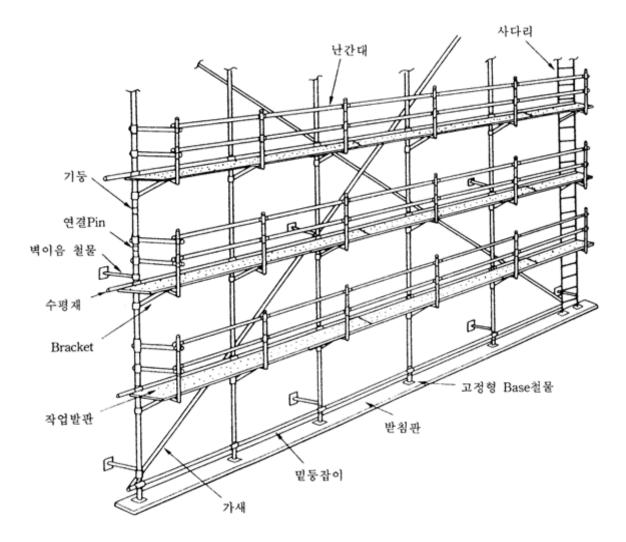
〈부록 2〉

쌍줄비계용 작업발판 설치(예)



〈부록 3〉

외줄비계(선반지주식)용 작업발판 설치(예)



〈부록 4〉

작업발판 점검결과표(예)

점검일: 00. 00. 00. 점검자: (서명), 확인자: (서명)

		,	. – .	, , , ,
	점검 내용(준수사항)	점검범위 (장 소)	이상 유무	조치 방법
1	작업발판 폭 40cm 이상 확보			
2	비계 등 구조물에 2점 이상 고정			
3	이동을 위한 가설통로 폭 20cm 이상 확보			
4	작업발판 끝에 안전난간 설치 - 상부난간대 높이(바닥에서 90~120cm) - 중간난간대 높이(상부난간대과 바닥의 중간)			
5	발끝막이 판 설치 (10cm이상)			
6	외벽면과 작업발판과 떨어진 거리 30cm 이내			
7	작업발판 바닥재간 틈 3cm 이내			
8	작업발판 바닥 개구부 발생			
9	작업발판 바닥에 걸림 턱 발생			
10	작업발판 바닥에 물, 기름 등 미끄러짐 위험			
11	작업발판 바닥에 재료・공구 방치			
12	강재작업발판(작업대) 안전인증 여부 확인			
13	강재작업발판(작업대) 사용 시 "재사용 가설기자 재 성능 기준에 관한 지침"에 의한 점검			
14	기타			

C - 08 - 2015

〈부록 5〉

작업발판 안전표지(예)

작업발판 사용 시 준수해야 할 주요시항

- 1. 작업 전 "작업발판 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" 실시 여부 확인
- 2.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대·안전모 착용 철저
- 3. 최대적재중량ㆍ재료별 최대적재수량 준수
 - 최대적재중량: kg(작업자 몸무게 감안)
 - 재료별 최대적재수량

(예) · 시멘트(40kg) : 포, · 유로폼(규격별) : 매,

・석재(규격별): 장, ・벽돌: 매 등

- 4. 작업발판 바닥은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 · 관리
 - 물, 기름, 흙, 모래, 톱밥 등 제거
 - 재료, 공구 등 방치 금지
- 5. 기타 주의시항

_